規　程　集

동의대학교

동의대학교대학원학칙

제5장 자격시험

제24조 (자격시험의 종류) 이 대학원 과정별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인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에관한세칙에 따른다. <개정 2008. 2. 1>

제25조 (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기) 학위청구논문 자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하며, 응시자격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에관한세칙에 따른다.

제26조 <삭제 2004. 3. 1>

제27조 <삭제 2004. 3. 1>

대학원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에관한세칙
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대학원 학칙 제5장 자격시험에 관한 그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종류 및 자격) ①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.

② 외국어시험은 외국어 문헌의 해독 및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.

③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관계분야의 학식을 종합평가 하는 데 있다.

제3조 (응시자격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

가. 외국어시험 : 2차수 이상인 자 <개정 2023. 10. 1.>

나. 종합시험 : 일반대학원 및 산업문화대학원, 부동산대학원은 3차수 이상인 자로서 18학점(단, 부동산대학원 16학점) 이상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, 특수대학원(산업문화대학원, 부동산대학원 제외)은 4차수 이상인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동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합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06. 3. 1., 2013. 3. 1., 2019. 10. 1., 2020. 2. 1. 2023. 10. 1.>

2. 박사학위과정

가. 외국어시험 : 2차수 이상인 자 <개정 2023. 10. 1.>

나. 종합시험 : 4차수 이상인 자로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<개정 2012. 5. 1., 2023. 10. 1.>

제4조 (응시절차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 (응시료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 (시험시기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기는 매 학기초 각 대학원에서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.

제7조 (시험과목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7.

1.>

1. 석사학위과정

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로 하며, 종합시험은 각 학과별로 지정한 종합시험 과목 중 일반대학원은 2과목, 특수대학원은 2과목 이상으로 한다. 단, 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 중 교과교육학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2. 박사학위과정

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로 하며, 종합시험은 각 학과별로 지정된 종합시험 과목 중 3과목으로 한다. <개정 2010. 7. 1., 2019. 2. 1.>

제8조 (시험방법) ①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한다.

② 외국어시험의 경우 TOEFL, TOEIC, TEPS의 취득점수가 이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인정 점수 이상이면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4. 1., 2020. 7. 1.>

과정	TOEIC	TOEFL		TEPS	TOPIK	비고
		CBT	IBT			
석사	600	160	60	480	4급 (예체능 3급)	TOPIK은 외국인에 한함
박사	650	200	75	530		

③ <삭제 2020. 7. 1.>

④ 외국어시험(영어)에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학과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전공영어 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.<신설 2011. 5. 1., 개정 2013. 5. 1.>

제9조 (시험위원)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을 본 대학교 및 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교수 중에서 위촉하여 출제 및 채점을 의뢰한다.

제10조 (합격판정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.

제11조 (재응시) 각 과정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서 각 과목의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얻은 과목은 합격으로 하고,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,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제12조 (결과보고)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.

부 칙

1.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폐지규정)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외국어시험및종합시험에관한세칙, 산업대학원외국어및종합시험시행세칙, 영상정보대학원외국어및종합시험시행세칙은 폐지한다.
3. (경과조치) 이 세칙의 부칙2(폐지규정)에 의하여 구 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세칙 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적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.
4.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8.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9.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0.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1. 이 개정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2.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3.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4.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5.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6. (경과조치) 이 세칙 제8조(시험방법)는 2020학년도 2학기 외국인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17. 이 개정 세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